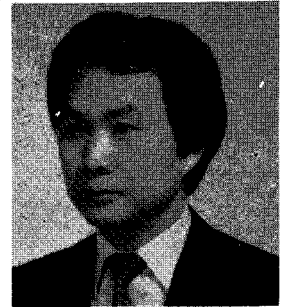


● 축산법 개정을 말한다

기업축산과 부업축산

— 양계산업을 중심으로 —



정 찬 길

건국대 축산대교수
농업경제학 박사

1. 머리말

급속한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은 축산물에 대한 높은 수요를 유발하였다. 이와같은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축산업 가운데 양산체제가 가능하여, 생산량의 면에서 가장 유리한 양계산업이 지난 10여년 동안에 경영체제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양계산업은 그 발전과정에서 수급조절 기능의 불완전성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심화로 심한 가격파동, 생산과잉과 타육류로의 빠른 대체에 의한 소비감소, 사료가격의 앙등에 따라 양계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도산양계농의 빈발등 많은 어려움을 견디어 내고, 오늘날 그 경영규모나 구조의 변화로 보아 전업내지는 기업적 양계산업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고도의 생산관리를 하는 긴 역사를 지닌 축산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래 양계산업의 동향으로 볼때 계속 가격과 계란가격(도표 1,2)의 상승율이 오랫동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국제곡물 시장이 경직

목 차

1. 머리말
2. 양계산업구조의 변화
3. 기업양계와 부업양계
4. 개정축산법과 양계산업
5. 맺는말

화됨에 따라, 국내 배합사료 가격의 앙등은 생산비를 높게하여 양계경영 수지를 압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전업이나 기업적 경영구조에 의하여 도입이 용이한 고도의 생산기술과 과학적 경영체제의 정착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처럼 생산효율의 증진을 위하여 양계농가를 전업내지 기업농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에 부업축산의 보호, 축산물

도표 1. 연도별 생계가격 추이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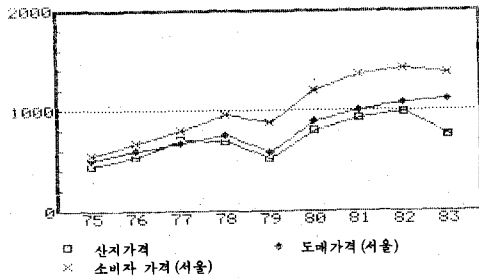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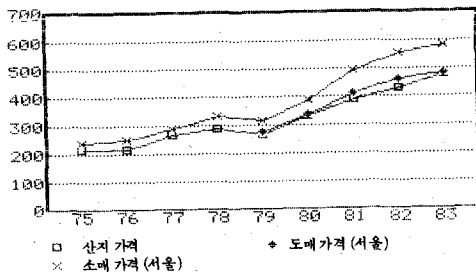


도표 2. 연도별 계란가격 추이(대란) 단위 : 원/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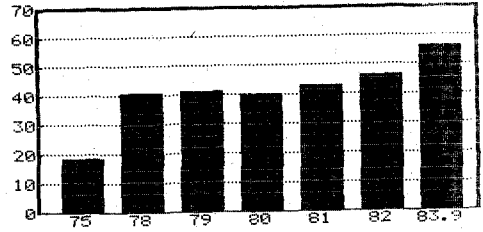
생산의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사육 기업축산을 규제하려고 하는 축산법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2. 양계산업구조의 변화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구조변화를 사육호수와 사육수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난 7년간에 걸쳐 사육수수는 1천880만수에서 5천659만수로 3배나 증가하였다. (도표 3)

사육규모별 사육농가 또한 많은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1978년부터 1982년 사이에 1,000수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는 약 30%, 3,000~5,000수의 사육농가수는 약 10%가 각각 감소한 반면 5,000~10,000수의 사육농가는 약 40%, 10,000~30,000수의 사육농가수는 약 30%가 각

도표 3. 연도별 사육농가호수 단위 : 백만



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대규모의 기업양계 농가로 30,000~50,000수와 50,000수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지난 1980년 이래 각각 128%와 90%로 매우 높은 증가를 보였다. (도표 4, 5)

또한 양계의 용도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종계의 수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산란계와 겸용계의 수수는 증감이 불규칙하다. (도표 6).

도표 4. 소규모별 사육농가호수 단위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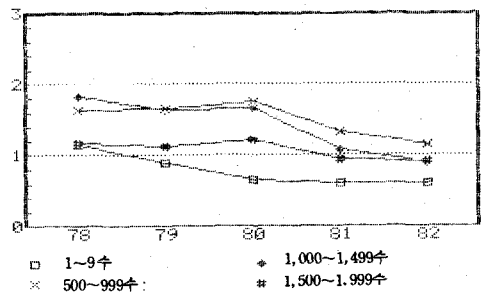


도표 5. 대규모별 사육농가호수 단위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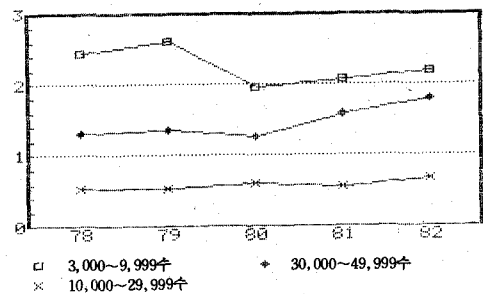


도표 6. 용도별 년도별 사육수수 단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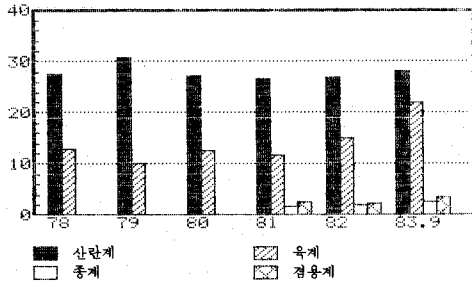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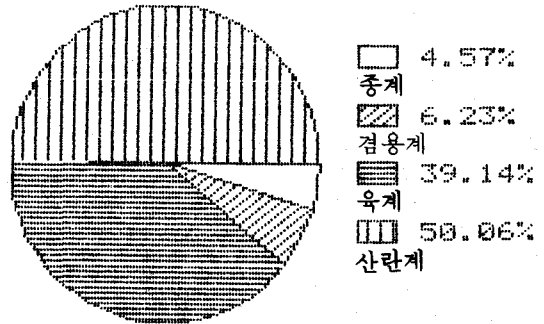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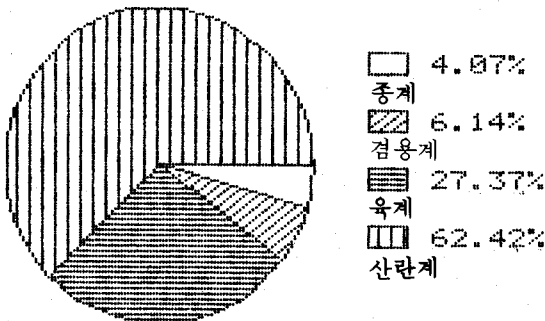
도표 8. 용도별 양계 사육수수 비율, 1983



용도별 구성은 1981년에 종계 4%, 산란계 62.4%, 육계 27.4%, 검용계가 6.2%였으나 1983년에는 종계와 육계는 각각 4.6%, 39.0%로 증가한 반면 산란계는 50.0%로 감소하였다. (도표 7, 8)

이와같은 양계산업구조의 변화로 볼때 양계산업은 소수의 손에 의해서 생산이 주도되는 전업내지 기업의 경영구조로 비교적 빠른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지난 6년여동안 양계의 사육농가호수와 사육수수의 변화를 보면 전체 양계농가호수는 감소하였고, 특히 이 가운데 부업이나 겸업형태의 양계농가호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전업내지는 기업형태의 사육농가와 이들에 의한 사육수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양계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이 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계산업은 자본집약적이며 기술집약적인 경영형태로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7. 용도별 양계 사육 수수 비율, 1981



3. 부업양계산업과 기업양계산업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시계열적(時系列的)인 양계산업의 경영구조의 변화분석에 따르면 생산효율의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전업 또는 기업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반하여,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볼때 부업적 양계농가를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방향의 모색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양계산물의 생산적 효율이나 원활한 공급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초점은 전업내지는 기업양계농의 육성에 집중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양계를 부업이나 겸업의 형태로 농가소득을 삼고 있는 많은 영세농가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코 도외시킬 수 없다는 데에 정책당국의 대안제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양계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1984년 현재 85%가 전업내지 기업화되어 있는 양계농을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15%에 해당하는 부업양계농은 경제적 가치판단을 떠나서 보호지원하는 정책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 주된 이유는 우리 축산업의 현실이 부업과 전 기업형태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양계농가의 보호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이 최대로 요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불안정한 전·기업적 양계경영형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것은 가격조건이나 자연적 조건이 유리하여 이윤

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량이 크면 클수록 총 이윤이 증대하여 규모의 수익성이 발생하고, 또 기업적 경영은 소규모의 부업적 경영에 비하여 장비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므로써 노동효율을 제고함에 따라 단위당 노동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생산물 단위당 고정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업양계농은 생산물의 판매상 유리한 지위를 점유할 수 있고 금융상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부업적 양계경영은 가격 및 자연조건이 불리할 때 대량손실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적 대경영의 불경제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또한 기업적 경영에서는 고용노동 등에 현금의 지출이 크지만, 부업적 경영에서는 자가노동이 중심이므로 노동의 성실성이 높고 현금지출이 적을 뿐만 아니라 탄력적으로 외부의 생산판매여건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상업적 경영체제가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 경영자가 양계생산물의 가격조건이나 현금지출과 수입에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 부업경영에서도 영리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리성의 기준이 전·기업양계경영에 있어서는 순수익인데 반하여 부업적 양계경영은 자가노동보수라는 사실에 있다.

이와같은 경영성과의 평가기준의 차이 때문에 전·기업경영이 손실을 보는 가운데서도 부업적 경영이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업적 양계경영도 경영환경에 따라 그 존속의 의의를 무시할 수 없다.

4. 개정축산법과 양계산업

지난 8월에 발표한 축산법 개정법률이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은 여건으로 둘러싸여 있는 양계산업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개정법을 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조항은 축산업의 등록 또는 허가를 규정하는 제13조 2항,

가축의 제열화생산을 강요하는 제13조 3항, 그리고 사육규모의 조절을 위한 감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14조 등을 들 수 있다.

개정안 제13조 2항의 목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양계업자를 포함한 축산업자를 규모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 및 가격 안정이 필요할 때에는 사육과 출하조절, 또는 비축, 판매, 처리방법 등을 명할 수 있고 수급 조절상 필요할 때에는 허가를 아니하거나 시설 및 사업규모를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 있는 사업에 전입하는 것을 규제할 수 없는 원칙적인 논쟁 이전에, 재벌기업들이 신규로 사업을 전개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특정 축산업과는 달리 양계산업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산업자체가 적자생존 생산체제 (Survival Production System)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생산효율성이 높은 경영규모로 스스로 조정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전체 산업의 85% 이상이 전업 내지 기업화되어 있는 현상이 전혀 도외시된 채 모든 축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육규모의 영세화를 자초하고 순수양축가의 발전의욕을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양계산업은 타 축산업과 경종농업에 비하여 전문성과 높은 기술활용으로 전문화내지는 기업화 추세에 있는 바 이는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정안 제13조 3항에 의하면 농가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축협,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또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자와의 계약에 의한 제열화 생산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생산비효율 증진을 위한 대량생산체제의 확립, 생산물의 제일성(齊一性), 육류대체확대, 생산기술개발 등이 중요한 요인들이다. 제열화 생산체제의 이들 요인들 가운데 생산비효율 제

고를 위한 경영체제의 일종에 불과한 것을 축산법에까지 규정해야 하는 지를 이해할 수 없다. 계열화 생산체제의 확립은 일반적으로 기업적 대규모 축산업자에 의해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영세한 다수의 양축농가와 의 계약에 의한 계열화는 가장 어려운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고 성공사례가 매우 희소한 실정이다. 즉 계열화 생산체제의 농기업적 개념에서 상업적 축산농가에 적용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여러 선진국의 축산업에서 실증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3조 2항과 3항은 그 목적에 이율배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양계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계열화 기법이 시행 착오를 감수하면서 추진되어 왔고,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양계산업의 경우 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업 혹은 기업양계농가들에 대한 성공적인 계열화 생산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나 금융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끝으로 법제14조에 명시된 등록 또는 허가된 종축업자, 부화업자 또는 축산업자가 이들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는 감축명령을 내리거나 초과사육부과금을 부과하며,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특히 양계산업의 경우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양계업은 무한한 부화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그 수수의 증감폭이 극심함에 따라 사육수수의 가변성이 매우 커서 적정사육규모의 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달리 생물을 기르는 양계산업에 어떻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웬만한 전업 양축농가는 모두가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논쟁의 비약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 행정력에 의한 물리적이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현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세제,

금융면에서 제도적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맺 는 말

양계산업은 기업적 원칙에 따라 생산자의 소수화, 생산규모의 대형화로 전업내지 기업적 경영체제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이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망된다. 그러나 일부 부업적 영세양계농가에게는 경제적 가치기준을 떠나서 이들이 경영소득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정된 축산법의 경우 아직은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 없으나, 법률상으로 본다면 몇몇 조항은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업내지 기업으로의 정착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의 개정된 축산법은 축종과 사육농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거나 그 시행령에 현실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가축의 생산, 사육, 출하조절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은 명령이 아닌 세제, 금융, 저장 및 보관시설, 기타 비물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모든 業所에 禁煙지역

LA, 어기면 징역 6 月刑

「로스엔젤레스」시 자치위원회가 사업장의 근로환경 등에 관한 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업장 내에 금연지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로스엔젤레스」의 업주들은 최고 6개월간의 징역형과 5백달러의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다고.